

## 세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에게 세실 분식회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에서는 현재까지 사건의 개요와 저희가 예정하는 진행 방향, 그리고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사건의 개요

세실은 천적을 활용한 농업 해충 방제업체로서 한국거래소에서 히든챔피언에 선정될 정도로 우량기업으로 알려졌으나, 2008.부터 농업인 등이 구매하지도 않은 천적을 판 것처럼 속이거나 농업인의 자부담금까지 천적을 공급하는 것으로 속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고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발견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2010. 12. 20. 세실의 회장 이원규와 대표이사 김헌기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농가지원 보조금 9,274백만원 편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및 공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세실의 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은 세실의 제20기(2009. 10. 1. ~ 2010. 9. 30.)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과 계속기업으로서

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공시하여 세실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으며, 결국 2011. 2. 10.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형사재판 1심에서 이원규와 김현기의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2011. 3. 22.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세실의 분식회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실은 ① 농업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세실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여 농업인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없는 자부담금 3,044,158,558원을 세실의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을 계산하여 제18기(2008. 1. 1. ~ 2008. 12. 31.)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고, ② 같은 방법은 3,647,570,315원을 세실의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을 계상하여 제19기(2009. 1. 1. ~ 2009. 9. 30.)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으며, ③ 2009. 8.경 주식회사 상남건설과 주식회사 에스엔종합건설을 운영하는 최병수와 세실의 공장 부대시설 등 8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25% 부풀려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자부담금 대납자금과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과 같은 용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을 741,250,000원 만큼 과다계상하여 제20기 반기(2009. 10. 1. ~ 2010. 3. 31.)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분식회계에 따라 2009. 1. 2. 기준 7,480원에 불과했던 세실의 주가는 허위의 200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09. 3. 전후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9. 5.에는 16,900원까지 치솟았으며 거래량도 평소의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09. 12. 이후 2010. 7.경까지 세실의 주가는 10,000원 대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조금씩 하락하다가 세실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질 무렵에는 2,000원 대까지 급락을 하였고, 정리매매기간 마지막 날에는 무려 242원까지 하락하여 마감을 하였습니다.

세실은 상장폐지 및 경영진의 공소제기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천적 농약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매출의 급감이 예상되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동부한농이 세실의 최대주주였던 NH에그리베스트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추진한 인수합병에 참여하여 세실을 인수를 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2. 향후 진행 방향

저희는 위와 같이 세실의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믿고 세실의 기업가치와 재무상태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로 바탕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세실 및 그 이사인 이원규, 김현기, 그리고 분식회계에 관하여 부실감사를 하여 매출채권의 과대계상을 발견하지 못한 외부감사인 한미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세실의 분식회계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소송 중 이원규, 김현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형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을 통해 분식회계의 구체적 자료를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행의 성공은 승소판결에 따라 그 집행을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는바, 저희는 회사, 그 경영진,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손해배상예치금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그간의 경험을 십분 살려 성공적인 결과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청구금액은 일단 투자손실액의 70%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원이 인정할 책임제한을 미리 감안한 것으로서 향후 소송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 원고의 범위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세실의 분식회계 및 한미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세실에 관한 잘못된 재무정보를 기초로 높게 형성된 시장가격을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믿고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식회계된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가 처음 공시된 2009. 3. 4. 이후부터 검찰의 수사로 인해 세실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일정부분 드러난 시점인 2010. 12. 8.까지 세실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일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세실 주식을 구입하였다가 중간에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종국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최종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외하고자 합니다.

#### 4. 피고의 범위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당해 회사 세실 및 이원규, 김헌기 등 이사 5명, 외부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공동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5. 소송비용

#####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은 **피해액의 1.5%** (부가세 포함, 이하 같습니다, 다만, 상장폐지시점까지 계속 보유 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시가를 ‘0’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이고**, 다만 향후 만에 하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2009. 3. 4.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로 상향조정된 성공보수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 6.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할 사항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자 하실 경우 (1) 위임계약서 2부, (2) 위임장 1부, (3)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4) 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신 **세실 거래내역서(보유중인 주식이 있을 경우 잔고증명서 포함)**를 2011. 7. 15.까지 저희 사무실로 직접 또

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과 (2)서류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을 계산하여 개별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소송비용을 **신한은행 100-027-361370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는 세실 분식회계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7월 20일경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박필서 변호사 또는 박현희 과장 (☎ 02-537-9500 / hannuri@hannurilaw.c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6. 21.

**법무법인 한 누리**  
대표변호사 김주영

## 위 임 장

수임인 : 법무법인 **한 누리** (www.hannurilaw.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지파이브 센트럴프라자 431호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annuri@hannurilaw.co.kr](mailto:hannuri@hannurilaw.co.kr))

※ 위임인 인적사항

투자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추후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으시면 반드시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시고, 괄호에 (O)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음 ( )

※ 승소금 수령시 지급받으실 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	--	----------	--	-----	--

상기 위임인은 이른바 (주)세실 분식회계 부실감사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2심 및 3심)에 관하여 상기 수임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민사조정신청 포함), 보전처분의 제기,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복대리인의 선임,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상소의 제기 및 수행, 강제집행 등 일체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
2. 상기 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법원에 제출할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새겨 위임장에 날인하는 행위도 포함)

2011. . .

위임인

(인)

\*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사 건 위 임 계 약 서

의뢰인( ‘갑’ ) :  
수임인( ‘을’ ) : **법무법인 한누리**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제1조(목적)**

갑은 아래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 라 한다)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명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상 대 방	(주)세실 등

**제2조 (위임사무의 범위)**

‘갑’ 이 ‘을’ 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외의 행위로 한다.

**제3조(수권범위)**

‘갑’ 은 ‘을’ 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에 기재된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을’ 을 변호사로서 법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을’ 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 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금)**

- (1) ‘갑’ 은 ‘을’ 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본안소송 소송비용과 착수금 명목으로 투자손실액의 1.5% (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거래정지시점까지 계속 보유 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시가를 ‘0’ 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한다)를 지급한다.
- (2) 착수금은 ‘을’ 의 변호사 또는 그 보조인력들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 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중재, 조정, 당사자의 사망, 소송물의 양도, 위임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경우에는 ‘갑’ 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 과 ‘을’ 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